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처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서 공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부재 등)하여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18.

파 주 시 장

가. 예정된 처분제목 : 개발행위 허가 취소

나.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및 「동법」 제136조

다. 처분(취소)사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5의2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법』 제133조제1항제7호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라. 청문대상

성명 (업체명)	주소	목적	면적(m2)	용도지역/지목	허가기간 만료일	청문일시	청문장소
(주)파주시 어민협의회 심호섭	진동면 동파리 122	골재파쇄장 부지조성	2,162	생산관리지역/대	2006.12.31	2016.08.08. (10:00)	파주시청 균형발전과



마. 공고기간 : 2016. 7. 19. ~ 2016. 8. 03.(15일간)

바. 의견제출 : 청문일 당일까지 (서면 또는 구술)

사.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아. 안내사항

-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붙임1]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사)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 균형발전과 개발민원3팀(☎031-940-5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파주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대리인선임통지서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 (<http://www.semincheon.kr>)



[붙임1]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 의제	개발행위허가(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포함)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대 리 인 선 임 통 지 서

1. 대 리 하 고 자 하 는 행 정 절 차 의 내 용	개발행위허가(산지 및 농지전용 포함) 취소청문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대 리 인 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 주 소	(전화:)		
4.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6년 월 일 당사자등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